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 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 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 (시행령 별표2의2)
- 다.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7조의8제3항 중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별표 2의2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위험물 분야의 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별표 3 제2호에 위반행위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17조의6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제2호의2	10	15	20	20
----------------------------------	-----------------	----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략)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 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u>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u>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소 <u>방 청 홈페이지 등에 -----</u> ----- ----- ----- ----- ----- ----- ----- ----.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② (생략)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u>일간</u> <u>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u> <u>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u> <u>적인 방법에 따라</u> 공고해야 한 다. ④ (생 략)	----- <u>소방</u> <u>청 홈페이지 등에</u> ----- ----- -----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667